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863호

2026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1차 신청 접수 공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구 분		일반(1차)	디지털(1차)	노인(1차)	장애인(1차)
신청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세 이상 성인 중 디지털 평생교육 수요자	65세 이상 성인	19세 이상 성인 등록 장애인
지원규모		14,332명 (전 자치구)	1,685명 (전 자치구)	1,346명 (전 자치구)	1,596명 (전 자치구)
사용기관		일반 사용기관	디지털 사용기관	일반 사용기관	일반 사용기관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			
신청기간		2026년 3월 16일(월) 10:00 ~ 2026년 4월 9일(목) 18:00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① 일반·디지털·노인 유형 :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또는 모바일 웹 (https://www.lllcard.kr/seoul) ② 장애인 유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 또는 모바일 웹 (https://plus.gov.kr)			
	오프라인	자치구별 평생교육이용권 현장 접수는 [붙임 4] 자치구별 평생교육이용권 현장접수 문의처 현황 참조			
선정방법		이용권 신청자 대상 자격확인 후, 이용자 선정 원칙에 따라 이용자 선정			
사용카드		NH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 ※ 기존 평생교육희망카드 사용 불가			
사용기간		NH농협 채움카드 한도 충전 후부터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문 의 처		☎ 1551-4777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일반 등, 장애인) ☎ 1600-300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일반 등) ☎ 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장애인)			

2026. 3. 16.

서울특별시장

1. 지원개요

- 사업명 : 2026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1차)
- 신청대상 :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가 선택하여 진행
(이용권 유형별 중복 지원 불가)

구분	이용권 유형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지원규모(명)
1	일반 이용권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332
2	디지털 이용권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성인 중, 디지털 평생교육* 수요자 * AI·디지털 교육 강좌 전용	1,685
3	노인 이용권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346
4	장애인 이용권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1,59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으로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포함

< 신청대상 관련 세부 기준 >

- 주소지 기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 연도별 신청·지원 가능한 이용권은 1개이며, 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 중복신청 시 ① 신청 일시(일자, 시간, 분 등) 순 ② (동일 날짜인 경우) 온라인 우선으로 접수
- 2026년 서울시 자치구(영등포구 등)에서 자체 시행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선정 이후 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중복 지원 불가
- 19세 기준(신청연도 기준) : 2007. 12. 31. 출생자까지
- 30세 기준(신청연도 기준) : 1996. 12. 31. 출생자까지
- 65세 기준(신청연도 기준) : 1961. 12. 31. 출생자까지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 교재 구매 시 강좌를 수강하는 사용기관에서의 결제에 한함
- ※ 교재 단독 구매 및 재료비·유무선 전자·통신기기, 전자교재(PDF, e-book) 등 사용 불가
- ※ 부정사용 유형 및 처리 안내 【붙임 7】 확인 필수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다만,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의 경우 '디지털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결제 가능

- ※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seoul>)에 접속하여 사용가능 기관 목록 확인

2. 신청

- 신청기간 : '26년 3월 16일(월) 10:00 ~ '26년 4월 9일(목) 18:00
 - ※ 모집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마감시한 이후 제출 불가하며,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일반·디지털·노인 평생교육이용권 : 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seoul>)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정부24 혜택알리미(<https://www.plus.gov.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일반·디지털·노인 평생교육이용권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절차 필수
 - ※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에 한해 현장 접수 가능 (자치구별 현장접수 문의처는 【붙임 4】 참조)
- 제출서류 : 지원 대상별 제출서류 【붙임 5】 , 【붙임 6】 참조
- 문의처 ☎ 1551-4777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
 - ☎ 1600-300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
 - ☎ 1660-0065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시스템 지원 콜센터
 - ☎ 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 로그인 > 온라인 상담
 - ※ 카카오톡 > 서울톡(서울시 대표 인공지능 상담사) 채널 친구 추가 > 챗봇 또는 상담원 채팅 문의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이용자 선정 : 이용권 신청자 대상 자격확인 후,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선정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자격 검증 및 중복 수혜 검사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정보연계를 통한 자격 검증으로 신청자격 부합 여부 확인
- 선정 기준
 - 신청자가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인원 보다 적을 경우 신청자 전원 선정
 - 신청자가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인원 보다 많으면 우선 선발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 이용권 전산 시스템(컴퓨터) 등을 활용한 추첨으로 선정

< 우선 선발 기준 >

-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1차)
 -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한 우선 지원대상자만 선발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장애연금·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디지털·노인 평생교육이용권 (1차)
 -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한 우선 지원대상자가 우선순위임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장애연금·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1차)
 -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한 우선 지원대상자가 우선순위임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장애연금·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선정자 발표 : '26년 4월 말(예정) * 선정결과 통보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확인 : 신청서에 기재한 통지방법(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에 따라 개별통지
 - ※ 일반·디지털·노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누리집-로그인-[마이페이지]-[평생교육이용권 신청내역]에서 선정결과 확인 가능
 - ※ 회원 정보 오기재 및 미수정, 수신거부, 수신 불가 기종 등으로 인한 미수신은 책임지지 않음

4. 이의신청

- 평생교육이용권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결정 여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메일 신청·접수
 - ※ 이의신청 제출처: slcard@smile.seoul.kr, 이의신청서 양식 : <붙임6-서식⑤> 참조
 - 처리방법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필요 시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심의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이의신청 심의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선정포기

- 평생교육이용권 선정 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포기 가능
 - 신청기간 :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 선정일 기준 **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 일반·디지털·노인 평생교육이용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로그인-[평생교육이용권]-[선정포기 신청]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이메일(slcard@smile.seoul.kr)로 신청·접수
선정포기 신청 서식 <붙임 6-서식⑥> 참조 ※ 신청서 접수 기준으로 포기 및 취소 처리됨
 - 처리방법 : 선정포기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처리
 - ※ 단,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이력이 확인될 경우 선정포기 불가

6.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사용카드 : NH농협채움카드(채움 로고가 있어야 함)

※ 평생교육이용권은 NH농협채움카드로 사용 가능함. 기존 평생교육희망카드 사용 불가

<사용 가능 카드 확인>

- ① NH농협카드 누리집 접속-[카드-카드신청/발급-카드찾기]-체크카드, 신용카드 목록 확인
- ② 체크카드, 신용카드 목록에서 '채움(채움)' 로고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신용카드 발급 시 별도 연회비 발생 주의

- 카드발급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수령*

※ 기존 NH농협채움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에 지원금 충전되며, 충전시 문자로 개별 알림(추가 발급 필요 없음. NH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는 카드발급 필수. NH농협채움카드 미소지자는 <사용 가능 카드 확인>을 참고하여 카드발급

※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평생교육이용권 카드(NH농협 채움카드) 미발급 시 이용 자격을 회수함(카드 포인트 미부여, 카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 재발급의 경우에도 기한 내 발급 필수)

※ NH농협카드(비씨), 지역화폐카드, 가족카드, 기업카드, 보조금카드, 일반특수목적카드, 면세유 카드 등은 사용 불가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다만,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의 경우 '디지털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결제 가능

- 사용처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 '26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교재 구매 시 수강하는 사용기관에서의 결제에 한함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 등) 불가

※ 등록된 이용권 사용기관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미등록 기관 또는 잘못된 결제 방법(할부거래 등)으로 결제 시 개인계좌에서 출금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결제시 발송되는 문자 내용 필히 확인(사용내역 조회: [농협카드 누리집]-[공공이용권] - [정부지원/이용권]-[이용내역 조회])

※ NH농협채움카드를 여러장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채움카드로 한도 내 결제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채움카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 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되니 **사용이력 필히 확인**

※ NH농협채움카드 관련 문의: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 사용기간 : NH농협체크카드 한도 충전 후 ~ '26년 12월 31일(목)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 이월 불가

※ 사용기간은 이용권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 공고문 및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드시 숙지 후 신청

○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 일반·디지털·노인 평생교육이용권의 경우 추후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 로그인-[마이페이지]-[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변경 필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콜센터(1551-4777)로 변경 신청

○ 2026년 서울시 자치구에서 자체 시행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의 중복수혜가 확인되었을 경우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또는 지원 불가

※ 중복수혜자 중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평생교육이용권 양도 및 대여, 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 이용권 목적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 이용권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이용권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음

※ 이용권 카드 결제 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선 취소 후 관련 내용 및 규정 안내)

- 붙임
1. 자치구별 평생교육이용권(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지원인원 1부.
 2. (일반·디지털·노인)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방법 1부.
 3. (장애인) '정부24 혜택알리미'를 통한 신청 방법 1부.
 4. 자치구별 평생교육이용권 현장접수처 현황 1부.
 5. 2026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서류 목록 1부.
 6. 2026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양식 1부.
 7. 부정사용 유형 및 처리 안내 1부.
 8.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 1부. 끝.

붙임 1**자치구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인원****붙임 1-1****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인원 및 예산 배정(안)**

(단위 : 명, 천원)

연번	자치구	지원인원	합계	국비(70%)	시비(9%)	구비(21%)
합 계		14,332	5,016,200	3,511,000	451,804	1,053,396
1	종 로 구	218	76,300	53,410	6,867	16,023
2	중 구	193	67,550	47,285	6,080	14,185
3	용 산 구	320	112,000	78,400	10,080	23,520
4	성 동 구	426	149,100	104,370	13,419	31,311
5	광 진 구	521	182,350	127,645	16,412	38,293
6	동 대 문 구	530	185,500	129,850	16,695	38,955
7	중 랑 구	596	208,600	146,020	18,774	43,806
8	성 북 구	646	226,100	158,270	20,349	47,481
9	강 북 구	449	157,150	110,005	14,144	33,001
10	도 봉 구	475	166,250	116,375	14,963	34,912
11	노 원 구	747	261,450	183,015	23,531	54,904
12	은 평 구	715	250,250	175,175	22,523	52,552
13	서 대 문 구	469	164,150	114,905	14,774	34,471
14	마 포 구	558	195,300	136,710	17,577	41,013
15	양 천 구	638	223,300	156,310	20,097	46,893
16	강 서 구	858	300,300	210,210	27,027	63,063
17	구 로 구	599	209,650	146,755	18,869	44,026
18	금 천 구	359	125,650	87,955	11,309	26,386
19	영 등 포 구	581	203,350	142,345	18,302	42,703
20	동 작 구	586	205,100	143,570	18,459	43,071
21	관 악 구	774	270,900	189,630	24,381	56,889
22	서 초 구	594	207,900	145,530	18,711	43,659
23	강 남 구	813	284,550	199,185	25,610	59,755
24	송 파 구	975	341,250	238,535	31,053	71,662
25	강 동 구	692	242,200	169,540	21,798	50,862

붙임 1-2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인원 및 예산 배정(안)
--------	-----------------------------

(단위 : 명, 천원)

연번	자치구	지원인원	합계	국비(70%)	시비(9%)	구비(21%)
합 계		1,685	589,750	413,000	52,908	123,842
1	종로구	25	8,750	6,125	788	1,837
2	중구	23	8,050	5,635	725	1,690
3	용산구	38	13,300	9,310	1,197	2,793
4	성동구	50	17,500	12,250	1,575	3,675
5	광진구	59	20,650	14,455	1,859	4,336
6	동대문구	60	21,000	14,700	1,890	4,410
7	종량구	72	25,200	17,640	2,268	5,292
8	성북구	75	26,250	18,375	2,363	5,512
9	강북구	54	18,900	13,230	1,701	3,969
10	도봉구	58	20,300	14,210	1,827	4,263
11	노원구	89	31,150	21,805	2,804	6,541
12	은평구	86	30,100	21,070	2,709	6,321
13	서대문구	54	18,900	13,230	1,701	3,969
14	마포구	64	22,400	15,680	2,016	4,704
15	양천구	77	26,950	18,865	2,426	5,659
16	강서구	102	35,700	24,990	3,213	7,497
17	구로구	72	25,200	17,640	2,268	5,292
18	금천구	42	14,700	10,290	1,323	3,087
19	영등포구	68	23,800	16,660	2,142	4,998
20	동작구	67	23,450	16,415	2,111	4,924
21	관악구	83	29,050	20,335	2,615	6,100
22	서초구	71	24,850	17,395	2,237	5,218
23	강남구	97	33,950	23,765	3,056	7,129
24	송파구	116	40,600	28,595	3,479	8,526
25	강동구	83	29,050	20,335	2,615	6,100

붙임 1-3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인원 및 예산 배정(안)
--------	----------------------------

(단위 : 명,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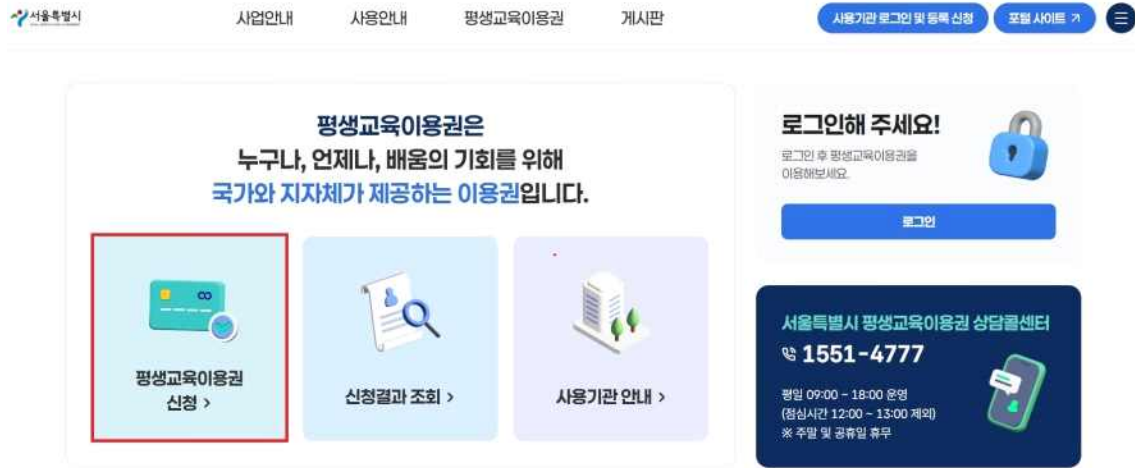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지원인원	합계	국비(70%)	시비(9%)	구비(21%)
합 계		1,346	471,100	330,000	42,176	98,924
1	종로구	22	7,700	5,390	693	1,617
2	중구	20	7,000	4,900	630	1,470
3	용산구	29	10,150	7,105	914	2,131
4	성동구	38	13,300	9,310	1,197	2,793
5	광진구	44	15,400	10,780	1,386	3,234
6	동대문구	52	18,200	12,740	1,638	3,822
7	종량구	61	21,350	14,945	1,922	4,483
8	성북구	62	21,700	15,190	1,953	4,557
9	강북구	53	18,550	12,985	1,670	3,895
10	도봉구	55	19,250	13,475	1,733	4,042
11	노원구	75	26,250	18,375	2,363	5,512
12	은평구	73	25,550	17,885	2,300	5,365
13	서대문구	44	15,400	10,780	1,386	3,234
14	마포구	44	15,400	10,780	1,386	3,234
15	양천구	59	20,650	14,455	1,859	4,336
16	강서구	79	27,650	19,355	2,489	5,806
17	구로구	61	21,350	14,945	1,922	4,483
18	금천구	35	12,250	8,575	1,103	2,572
19	영등포구	51	17,850	12,495	1,607	3,748
20	동작구	54	18,900	13,230	1,701	3,969
21	관악구	66	23,100	16,170	2,079	4,851
22	서초구	51	17,850	12,495	1,607	3,748
23	강남구	68	23,800	16,660	2,142	4,998
24	송파구	85	29,750	21,055	2,448	6,247
25	강동구	65	22,750	15,925	2,048	4,777

(단위 : 명, 천원)

연번	자치구	지원인원	계	국비(70%)	시비(9%)	구비(21%)
합 계		1,596	558,600	391,000	50,299	117,301
1	종로구	23	8,050	5,635	725	1,690
2	중구	22	7,700	5,390	693	1,617
3	용산구	28	9,800	6,860	882	2,058
4	성동구	44	15,400	10,780	1,386	3,234
5	광진구	50	17,500	12,250	1,575	3,675
6	동대문구	63	22,050	15,435	1,985	4,630
7	종랑구	84	29,400	20,580	2,646	6,174
8	성북구	70	24,500	17,150	2,205	5,145
9	강북구	70	24,500	17,150	2,205	5,145
10	도봉구	63	22,050	15,435	1,985	4,630
11	노원구	107	37,450	26,215	3,371	7,864
12	은평구	88	30,800	21,560	2,772	6,468
13	서대문구	49	17,150	12,005	1,544	3,601
14	마포구	51	17,850	12,495	1,607	3,748
15	양천구	73	25,550	17,885	2,300	5,365
16	강서구	116	40,600	28,400	3,674	8,526
17	구로구	80	28,000	19,600	2,520	5,880
18	금천구	50	17,500	12,250	1,575	3,675
19	영등포구	61	21,350	14,945	1,922	4,483
20	동작구	58	20,300	14,210	1,827	4,263
21	관악구	83	29,050	20,335	2,615	6,100
22	서초구	41	14,350	10,045	1,292	3,013
23	강남구	62	21,700	15,190	1,953	4,557
24	송파구	82	28,700	20,090	2,583	6,027
25	강동구	78	27,300	19,110	2,457	5,733

붙임 2

(일반디지털노인)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방법



-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illcard.kr/seoul>) 접속
- ▶ 화면 왼쪽 [이용권 신청] 선택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을 위한 이용권 신청 화면입니다.

1단계
약관동의

2단계
본인인증 및
자격검증

3단계
신청서 작성

4단계
이용자 서약

5단계
신청완료

1

2. 본인인증 및 자격검증
신청가능한 평생교육이용권

주인등록 상 호적남도 거주	신청
증정남도 평생교육이용권 1차 일반(지역특화) 300,000원 2025-08-01 호적까지 · 자격요건: 19세 이상 · 소속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2024-08-01 (15:45) ~ 2024-08-30 (18:45) · 신청발급일: 2024-9-30	신청
증정남도 평생교육이용권 1차 디지털 300,000원 2025-08-01 호적까지 · 자격요건: 19세 이상 · 소속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2024-08-01 (15:45) ~ 2024-08-30 (18:45) · 신청발급일: 2024-9-30	신청

이전

2

자격검증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41218-1*****
평생교육이용권 유형	일반(지역특화)

자격확인: 기초생활 수급자

홍길동님은 선택하신 평생교육이용권 2차 일반(지역특화)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신청 자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작성하는 서류는 해당 지자체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귀속됩니다.

☒ 예
 ☐ 아니요

확인

- ▶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후 자동 자격 검증 및 신청 유형 선택

붙임 3

[장애인] '정부24 혜택알리미' 를 통한 신청 방법



For Foreigners ▾ | 어린이 ▾ | 지원 ▾ | 회원크기 ▾

통합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민원서비스 ▾

혜택알리미 ▾

정책정보 ▾

고객센터 ▾

홈 > 혜택알리미

혜택알리미

Facebook Twitter Email Print

몰라서 놓쳤던 혜택,
이제는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지금 동의하고 맞춤 안내를 받아보세요.

동의 후 맞춤혜택 알림 받기



지금 많이 찾는 혜택

한파로 생활이 어려워질 때, 난방비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무요

연초에 꼭 챙겨야 할 건강·생활 점검, 연말정
산·부형·여금 등 필수 안내 무요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의 돌봄·보
육 지원 정부 하누에

※ '정부24 혜택알리미' 클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For

민원서비스 ▾

혜택알리미 ▾

정책정보 ▾

고객센터 ▾

홈 > 혜택알리미 > 전체 혜택

전체 혜택

③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④



고급검색

적용된 검색어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검색 결과 10,919개

※ ① '정부24' 로그인 후 → '혜택알리미' 클릭 → ② 전체 혜택

※ ③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입력 → ④ 조회

⑤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서비스 선택 → ⑥ 신청

붙임 4
자치구별 평생교육이용권 현장접수 문의처 현황

연번	자치구	문의처	연락처	비고
1	종로구	평생교육과	02-2148-2062	
2	중구	자치행정과	02-3396-4592	
3	용산구	교육지원과	02-2199-6494	
4	성동구	교육지원과	02-2286-5857	
5	광진구	평생교육과	02-450-7538	
6	동대문구	교육정책과	02-2127-4979	
7	종량구	교육지원과	(일반)02-2094-1922 (장애인)02-2094-1924	
8	성북구	평생학습관	02-2241-2422	
9	강북구	강북구 평생학습관	02-901-2351	
10	도봉구	교육지원과	02-2091-2338	
11	노원구	노원평생교육원	02-2116-3993	
12	은평구	시민교육과	02-351-7259 02-351-7254	
13	서대문구	교육지원과	02-330-3838	
14	마포구	평생학습센터	02-3153-8972	
15	양천구	평생학습관	02-2620-4730	
16	강서구	교육지원과	02-2600-6982	
17	구로구	교육지원과	02-860-2841 02-860-2660	
18	금천구	교육지원과	02-2627-2240	
19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	02-3457-7021~2	
20	동작구	평생학습관(동작구민대학)	02-820-9204	
21	관악구	관악구평생학습관	02-879-5673	
22	서초구	교육지원과	02-2155-8827	
23	강남구	교육지원과	02-3423-5283	
24	송파구	교육협력과(평생교육팀)	02-2147-2376	
25	강동구	강동구평생학습관	02-3425-5224 02-3425-5222	

붙임 5

2026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서류 목록

□ 온라인 신청

구분		작성서류	제출 방법		비고
			온라인 작성(인증)	파일(스캔) 별도 첨부	
공통	서식 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일반·디지털·노인, 장애인)	○		· 평생교육이용권 : 온라인 신청 시스템 (https://lllcard.kr/seoul) 입력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정부24 혜택알리미(https://plus.gov.kr) 입력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 ③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약동의서	○		
	-	신분증(본인인증)	○		

□ 오프라인 신청

구 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식 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일반, 장애인)	자치구별 접수처로 제출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③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약동의서	
	-	신분증(본인인증)	
필요시	서식 ④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신청서 미접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붙임 6

2026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양식

【서식 ①】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 활용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일반·디지털·노인)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이용권유형 [] 일반(지역특화) 평생교육이용권(19세 이상 성인) [] AI·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30세 이상 성인) [] 노인 평생교육이용권(65세 이상 노인)	신청 차수 차	
	대상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주소		
	휴대전화 번호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 사항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증명서 7.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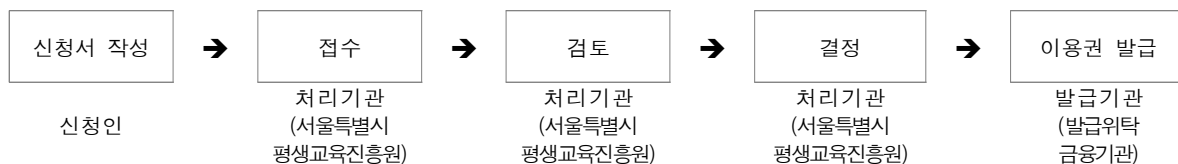
작성방법

-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이용권유형은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권 유형을 적고, 신청 차수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차수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등록 장애인 여부 ※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반드시 체크 여(맞습니다) [], 부(아닙니다)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한부모가족 ※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체크	
	주소		
	휴대전화 번호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신청인 제출서류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 사항	1.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등록장애인 확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7. 가족관계등록부 8.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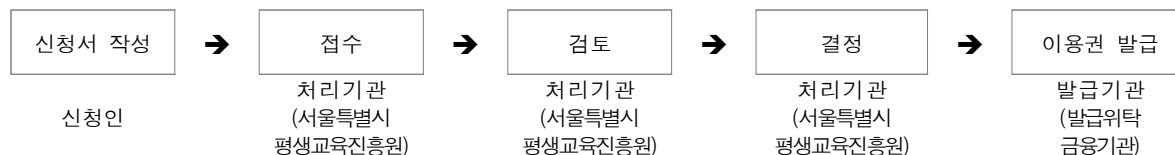
작성 방법

-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 휴대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서식 활용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평생학습계좌번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발급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u>5년</u> , <u>회원탈퇴 시</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발급위탁금융기관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u>목적달성시 까지</u>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선정·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항 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u>주민등록번호</u>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u>5년</u>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서식 ③】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약약 동의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약약 동의서】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위한 필수사항 관련 약약		본인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공고를 고지받았으며, 필수적인 서류 누락 및 오제출, 공고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 처리에 약약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제45조의3(벌칙),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 이용권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이용권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이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다.
- 2026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 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 이용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한 강좌 수강 없이 교재 단독 구매 불가
 -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전자교재(PDF, e-book 등) 불가

※ 이용권 사용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재료비 사용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때, 평생교육 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특히,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에 따른 환불은 'NH농협은행 채움카드'의 결제 취소로 가능하며,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현금 환불 불가)

본인은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고지받았으며,
해당 사항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 처리에 약약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	--	----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서식 ④】 위임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사항	민원명	발급통수	용도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식 활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
의
의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 내	처리기간은 지자체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의신청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평생교육이용권 이의신청 결과 접수 및 처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의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⑥】신청(접수) 취소 및 선정포기 신청서식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접수) 취소 및 선정 포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사 항		[] 신청 취소 [] 접수 취소 [] 선정 포기 ※ 이용권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불가			
신 청 사 유		※ 해당내용 기재			
포 기 신 청 일 (선정 포기자만 기재)		년 월 일			

해당 평생교육이용권은 포인트 미사용일 경우 선정 포기가 가능하며
위 선정 포기신청서 접수 이후부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재신청(원상복구)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포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포기신청서			
처리절차	포기신청 신청인 ➔ 접수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검 토 확 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결 과 통 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7

부정사용 유형 및 처리 안내

< 이용권 부정사용 유형 >

- ◆ 이용권 또는 이용권을 통한 서비스를 가족 포함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의 행위
- ◆ 이용권 사용처 이외 기관 강좌 수강 및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구매 유도하는 행위
- ◆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용권을 사용하는 행위
-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 이용권 부정사용 처리기준 >

대상	유형	조치사항
이용권 이용자	■ 이용권 카드 부정사용(양도·대여 등)	■ 이용권 사용 정지 또는 이용 제한 ■ 이용권 부정 사용액 환수
	■ 이용권 담합·환불 등을 통한 현금화	
	■ 이용권 목적 외 사용 (사용기관 수강료 및 해당하는 교재 이외 사용)	
지원 미대상자 (제3자)	■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발급 및 사용(타인의 정보 이용하여 발급 등)	■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사용 기관	■ 사용기관 등록 범위 및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용권 부당 이득금액 반환 ■ 이용권 사용기관 운영중지 또는 등록취소 ■ 사안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 타인 명의도용 이용권 신청 및 부정 사용 (신청인 본인의 요청 및 동의 없이 임의로 이용권 신청 또는 사용)	
	■ 사용처 이외 강좌 수강 및 목적 외 사용(재료·물품 구매) 등 부정 사용 유도	
	■ 서비스 비용 허위·과다 청구	
	■ 이용권 담합에 의한 현금화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공급)	

※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 (허위·과다 청구, 목적외 사용에 대한 환수),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카드 양도·대여) 등

※ 세부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부정사용 처리 기준 및 절차('23.8.25.)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붙임 8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

구분	종류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기관	■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30조~제38조
	■ 시·군·구 평생학습관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1조의3 (해당조례)
타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 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여성인력개발센터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해당조례)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가,다,아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해당조례)
	■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99조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도로교통법」 제104조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해당조례)
학점은행제 기관	■ 평생교육시설 ■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 시간제 등록제(학력보완교육)를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등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 「고등교육법」 제36조